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통한 인천시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의 부실, 재원의 부족, 총괄 조직 부재 등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 주거복지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고 시의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대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2. 주요내용

- 주거약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인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함(안 제7조)
-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13조)
-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 등”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주거복지사업

제4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약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주거복지사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구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7.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주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주거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 등
5.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및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14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
 - 제1조(목적)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주택법
 - 제5조(주거실태조사)
 -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설정 등)
 -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5조4(주택임차료의 보조)
 - 제8조(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주택법 시행령
 - 제6조(주거실태조사)
 - 제7조(최저주거기준의설정 등)
 - 제8조(시·도주택종합계획의 범위)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6조(시·도주거지원계획의 수립)
 - 제7조(주거실태조사)
 -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시행령
 -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1조(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8조(임차료의 구분)
 - 제9조(월임차료의 지급)
- 긴급복지지원법
 - 제2조(정의)
 -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 제7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 주택법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3.1.27] 제5조의4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

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 시행령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 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10.7.6>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0.7.6>

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16, 2012.7.24, 2013.5.31〉](#)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4. 주거수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택법」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임차료의 구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월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4]

제9조(월임차료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른 월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대여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임차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10.6.30, 2013.3.2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2010.6.30>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30.>

□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제7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2.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제4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주거복지실태조사

제6조(주거복지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수준 및 욕구의 파악을 위해 주거복지실태 조사를 실시

다. 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주거복지위원회 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 주거복지지원센터

제14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주거실태조사: 5년/2회(정기 500,000천원, 필요시 200,000천원)

2) 주거복지사업

- 주택바우처 사업 : 1,788,000천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2,500,000천원(2년)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 3,495,000천원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지원(공동전기료의 50%지원)
: 951,000천원
-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저소득자중 위기상황발생시 지원)
: 1,007,000천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안) : 803,360천원(160,672천원×5년)

3) 주거복지위원회

- 심의위원 수당 : 7,500천원(1,500천원×5년)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11,251,8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 업 비		11,251,860	2,400,172	3,364,172	1,837,172	1,762,172	1,888,172
재원별	국 비	5,245,000	969,000	1,966,000	720,000	770,000	820,000
	시 비	6,006,860	1,431,172	1,398,172	1,117,172	992,172	1,068,172
	군구비						

다. 재원조달방안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 국비(기금) 70%, 시비(일반회계) 30%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 국비 100%
- 그 외 사업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건설교통위원회 이 재 병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54,000	1,296,000	(국토부	사업	종료예정)	1,750,000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515,000	670,000	720,000	770,000	820,000	3,495,000
	소 계	969,000	1,966,000	720,000	770,000	820,000	5,245,000
세출	주거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500,000		200,000	-		700,000
	주택바우처 사업	288,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88,000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648,000	1,852,000	(국토부	사업	종료예정)	2,500,000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515,000	670,000	720,000	770,000	820,000	3,495,000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지원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11,000	951,000
	사회취약계층 간접 주거비 지원	117,000	200,000	215,000	230,000	245,000	1,007,000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안)	160,672	160,672	160,672	160,672	160,672	803,360
	주거복지위원회 구성운영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소 계	2,400,172	3,364,172	1,837,172	1,762,172	1,888,172	11,251,860
재원 조달		-	-	-	-		-
국 비		969,000	1,966,000	720,000	770,000	820,000	5,245,000
시비	소 계	1,431,172	1,398,172	1,117,172	992,172	1,068,172	6,006,860
	일반회계	1,431,172	1,398,172	1,117,172	992,172	1,068,172	6,006,86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간							
기 타							